



IV. 부가가치세법 개요,

부가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작성실무 등



1. 부가가치세법 각 조문별 개요와 과세책임사항

(1) 부가가치세법의 조문별 개요

구 분	일반 과 세 사 업 자	간 이 과 세 자																																
과 세 대 상 (법 §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재산적 가치있는 유체물, 사용 소비되는 소요재화) - 화폐 · 수표 · 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제외																																	
납세의무자 (법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개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단체(영리목적의 유무불문) 제6조 : 재화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도 과세 제7조 : 용역의 공급 ○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8조 : 재화의 수입 	<p>〈간이과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1억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향후 과세표준양성화 효과 감소 안인상여부 결정 2000. 7. 1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만 있음.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 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 																																
과 세 기 간 (법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기→1월 1일~6월 30일 ○ 제2기→7월 1일~12월 31일 	1월 1일~12월 31일																																
과 세 표 준 (법 § 13)	<p>부가세 불포함한 순공급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 대가 수령시⇨그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 수령시⇨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과의 재화 · 용역 거래시 부당대가 수령 또는 대가 없는 경우 ⇨시가 ○ 폐업시 재고자산⇨시가 ○ 공급시기의 외화환산가액 <p>수입에 대한 과세표준</p> <p>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및 교통세의 합계액</p> <p>과세표준 불산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누리액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 손괴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p>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p> <p>* 위탁가공수출시 완성후 인도 가액(총액)</p> <p>〈매출차감 · 가산항목 과세방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기업회계수익</th> <th>법인세익금</th> <th>부가세과표</th> </tr> </thead> <tbody> <tr> <td>예 누리</td> <td>⊖</td> <td>⊖</td> <td>⊖</td> </tr> <tr> <td>환 입</td> <td>⊖</td> <td>⊖</td> <td>⊖</td> </tr> <tr> <td>파 손</td> <td>⊖</td> <td>⊖</td> <td>⊖</td> </tr> <tr> <td>멸 실</td> <td>⊖</td> <td>⊖</td> <td>⊖</td> </tr> <tr> <td>할 인</td> <td>⊖</td> <td>⊖</td> <td>⊖</td> </tr> <tr> <td>장 러 금</td> <td>⊖</td> <td>관측비</td> <td>포 함</td> </tr> <tr> <td>연체이자</td> <td>잡수입</td> <td>익 금</td> <td>제 외</td> </tr> </tbody> </table>	항 목	기업회계수익	법인세익금	부가세과표	예 누리	⊖	⊖	⊖	환 입	⊖	⊖	⊖	파 손	⊖	⊖	⊖	멸 실	⊖	⊖	⊖	할 인	⊖	⊖	⊖	장 러 금	⊖	관측비	포 함	연체이자	잡수입	익 금	제 외
항 목	기업회계수익	법인세익금	부가세과표																															
예 누리	⊖	⊖	⊖																															
환 입	⊖	⊖	⊖																															
파 손	⊖	⊖	⊖																															
멸 실	⊖	⊖	⊖																															
할 인	⊖	⊖	⊖																															
장 러 금	⊖	관측비	포 함																															
연체이자	잡수입	익 금	제 외																															



구 분	일 반 과 세 사 업 자	간 이 과 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운송관련 제반부대비용 ○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 재화·용역 공급후의 할인액 재화·용역 공급대가 아닌 것 ○ 협회비·찬조금·특별회비 ○ 원자재공급받아 포함시키는 금액 ○ 공급확정후의 환율차액 																			
세 율 (법 § 14)	매출액×10% 매입액×10%	<간이과세자>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영 세 율 (법 § 11) 세율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하는 재화(영 § 24)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영 § 25) ○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영 § 26) 																			
면 세 (법 § 12)	○ 면제되는 재화·용역⇒영 § 28~영 § 47																			
세 액 (법 § 17)	공급가액×10% - 수취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일반적으로 매입액×10%) ⊖ 대손세액공제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업종</th> <th style="width: 50%;">부가가치율</th> </tr> </thead> <tbody> <tr> <td>전기·가스·증기·수도</td> <td>5%</td> </tr> <tr> <td>소매업</td> <td rowspan="2">10%</td> </tr> <tr> <td>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td> </tr> <tr> <td>음식점업</td> <td rowspan="4">20%</td> </tr> <tr> <td>제조업</td> </tr> <tr> <td>농·임·어업</td> </tr> <tr> <td>숙박업</td> </tr> <tr> <td>운수 및 통신업</td> <td rowspan="3">30%</td> </tr> <tr> <td>건설업</td> </tr> <tr> <td>부동산임대업</td> </tr> <tr> <td>기타 서비스업</td> <td></td> </tr> </tbody> </table>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간이과세자의 세액 : § 26③>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율×10% ○ 위 여러 사업 겸영시 -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에 위 율을 각각 적용함. ○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면제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환 급 (법 § 24)	○ 조기환급⇒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신고기한 경과후(15일내 환급)) (일반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큰 경우(확정신고기한 후 30일내 환급))																			

구 분	일 반 과 세 사 업 자	간 이 과 세 자
신 고·납 부 (법 § 18 ~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신고기간 ⇨ 제1기 : 1월 1일~3월 31일 ⇨ 제2기 : 7월 1일~9월 30일 ○ 예정신고납부 ⇨ 제1기 : 4월 25일(외국법인도 동일) ⇨ 제2기 : 10월 25일(외국법인도 동일) * 직전과세기간부터 계속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 고지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예정고지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3개월마다의 자진예정신고 안하고 또한 세무서의 예정고지없이 자진확정신고만 함.
납 세 지 (법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가 원칙임.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만 신청하여 <u>총괄납부</u> 가능함(신고서는 각 사업장 세액은 ⊕ ⊖ 상계하여 납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여 총괄신고·납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도 1월 25일 ○ 영수증교부 제출의무
세액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세액공제(법 § 17의2) -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 재고매입세액공제(법 § 17의3)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전환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영 § 63의2가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매입세액가산(법 § 26의2)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재고납부세액(영 § 74의4)을 납부세액에 가산



구 분	일 반 과 세 사 업 자	간 이 과 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조특법 §108)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취득가액으로 106분의 6 공제 ○ 의계매입세액공제(법 §26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구입액의 2/102, 음식점업 3/103(개인 8/108,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 중소기업업 4/104 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관련 매입세액공제(법 §32의2) - 2014년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전자화폐발행세액의 1.3%(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6%) 공제, 연 500만원 한도, 법인을 제외한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개인사업자만 적용 해당 	

2.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납세의무자의 범위

(1) 과세대상거래의 분류와 납세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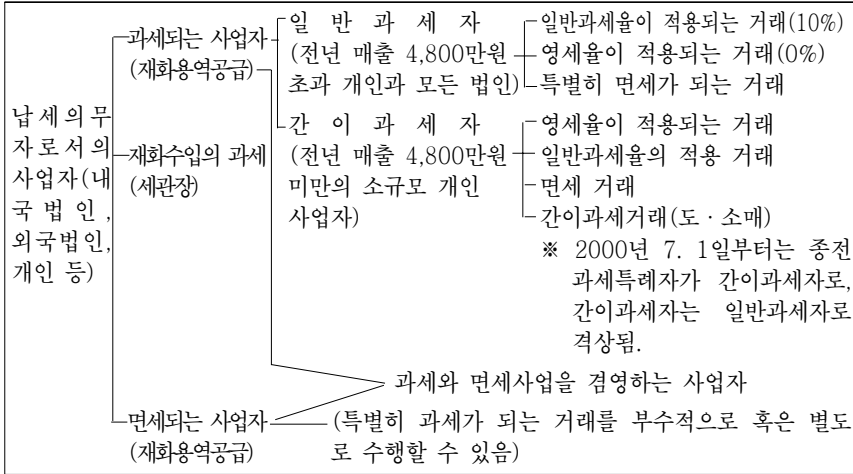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인이나 법인자격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적용의 경우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사업상 공급에 과세됨이 원칙이지만 특정거래나 특정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역진성을 배제하기 위해 일반과세외에 면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 및 외화획득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한다.

광의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면세사업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과세와 면세사

업의 경영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밖에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와 약식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이상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구분



(3) 재화공급의 유형과 과세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사업자 외부에 대한 것과 내부에 대한 것이 있고 기타 특정목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도 있다.

- 사업자 외부에 대한 일반적인 재화공급
 - 계약상이나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거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여기에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가공계약, 현물출자, 수용 등이 있다. 2006년부터 공매·경매거래는 부가세 과세거래에서 제외함. 즉 부가세 면제임). 창고증권의 양도로 임치물 반환안되거나 위탁가공위해 대가없이 반출,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한 경우도 재화공급아님.
- 사업자 내부거래에 대해 공급의제되는 재화의 공급
 - 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 재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총괄납부 아닌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 등)



- 개인적 공급(임직원에 복리후생품 제공)이나 사업상의 증여(고객·불특정다수 등), 경품증정, 추첨제공현물 등
- 사업 폐지시의 잔존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기타의 거래(즉, 부가세면세거래임)
 -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저당권, 질권 및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동산과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 사업양도(사업장별 혹은 사업부문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사업자의 사업부문별 양도를 포함함.
 -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도 과세제외 거래임(부가세 과세안됨).

(4) 역무(서비스)의 제공과 과세여부

역무의 제공이나 재산·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 하는데 여기서 역무란 통상적인 용어로서 용역 또는 서비스라고 칭한다. 역무는 대부분 인적 용역으로서 유형적 혹은 물적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 생산·사용·소비 등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은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업·숙박업·음식점업·운수업·창고업 및 통신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서비스의 범위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나 일부 부담하는 것, 상대방이 인도해준 위탁자재에 단순가공해주는 것, 산업·상업·과학 지식정보제공 등

3. 공급대가결정과 계산방법 및 이자의 포암여부

(1) 재화·용역대가의 이자·할인 등 각종 가감액의 과세표준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 제48조제11항은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용역공급대가 확정후 대가지급지연의 연체이자(는) 재화·용역공급대가가 아니고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대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 주어도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냐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자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 따라 이자소득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의 해석으로 보아서는 공급대가의 단순지급지연이자금액은 이자소득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경부예규 재소독 46073-71, 99. 5. 3)이다. 「소득세법」에도 특별히 이자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상기의 유권해석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이자소득 아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상황에서 정식으로 금전사용 소비대차관계로 전환한 경우는 해당이자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보는데, 이는 기존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제4항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공급대가에 추가되는 이자대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공급대가 관련 이자상당금액의 과세방법 비교

추가금액 비교개념	공급대가 확정전 기간이자 계산액	공급대가 확정후 지급지연 연체이자	공급대가 확정후 매출채권미수금의 금전소비대차변경후이자
개 념	대금지급기간을 길 게 잡아 주고 대가 추가계산하는 금액	지급기일이 늦어져 추 가계산해주는 연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후 정 식으로 이자소득받는 금액
적용이자율	공정거래법상 7.5%	· 일반금리 · 특수관계자는 가중평 균차입이자율	쌍방약정이다.
재화용역 공 급대가 여부	과세표준에 포함	과세표준 제외	과세표준 제외
공급자의 증빙 및 대체증빙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세금계산서 작성 안함. 입금표 교부	세금계산서 작성 안함(상 대방이 지급명세서 작성).



공급자(수취자)의 손익귀속	일반수입·매출액으로(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사업수입(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임)	영업외 수익 등(개인사업자는 이자소득임. 비영업대금이자)
소득구분	사업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공급받는자(지급자)의 세무처리 절차	총액이 매입액임(매입세액 공제됨).	지급이자의 일종으로 매입부대비용이지만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은 아님.	금융비용 지급이자처리함.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함(지급명세서 작성교부).
증빙교부 의무자	공급자(세금계산서)	없음(입금표) : 수취자(공급자)	지급자

(3) 공급대가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 및 기타의 납세절차관련내용

당초의 공급가액 (정상현금가)	지급기일 2달 초과 공정거래 이자상당액	공급대가지급지연이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해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법상 공급대가 아님. 세금계산서 교부불필요(교부하면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불능) · 과세대상 이자소득아니므로 원천징수는 불필요 · 공급자(대가받는 자)가 입금표 등 작성해줌. · 공급자 입장에서 주수입매출이 아니고 기타 매출 혹은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함. · 지급자 입장에서는 매입원가에 추가되는 취득원가임.
<p>← 당초에 세금계산서 포함금액(가) →</p> <p style="text-align: center;"> → (나) ← </p> <p>(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당초 약속일자보다 조기에 지급하여 깎아주는 금액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2007년부터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되는바 세금계산서상에서 차감하여 기재하고 회계·세무상으로도 차감된 순매출액으로 하며, 순매출액은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는 ㉠를 매출액 차감으로 · 지급자는 ㉡를 매입원가의 감액(취득원가 차감항목)으로 처리함. 		
<p>← 원래의 공급가액 →</p> <p>(현금가+외상기간 이자계산액) 공정거래 적용이자율(연 7.5%)</p>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공급대가지급 이행최종날자 이후에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서 대금지급을 늦추고 별도금액 지급한다면 이는 금전대차거래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공급받는자(대가지급자)가 추가금액지급시 비영업대금으로 원천징수(추가지급액×25%)함.

4.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납부절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하여 1년당 독립된 2과세기간(각 6개월)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인 거래시마다 납부할 세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확보한 상태가 되는데, 세금징수의 조기확보 및 조세수입평균화와 일시납부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자금부담 분산을 위해 각 과세기간 6개월의 처음 3개월(1월부터 3월말, 7월부터 9월말) 간에 해당 3개월간의 매출·매입거래에 대해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사업의 개시·계속존속 및 폐업에 따른 예정·확정신고기간을 보여 주고 있다.

각 과세기간	사업별 존속여부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기간
제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외국법인도 동일)	사업신규자 사업계속자 사업폐업자	사업개시일이나 사업자등록일(사업개시일전 등록시)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개시일 혹은 1월 1일부터 합병등기일(합병시의 소멸법인), 사업폐업일
제2기 확정신고 다음년 1월 25일까지 (외국법인도 동일)	사업신규자 사업계속자 사업폐업자	사업개시일이나 사업자등록일(사업개시일전 등록의 경우)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개시일 혹은 7월 1일부터 합병등기일(합병시의 소멸법인), 사업폐업일

(2)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요약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관련 시행령과 통칙 등의 규정을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실제 공급시기 날짜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적법하며 가산세 없음).



거래구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	법인세법상의 수익귀속사업연도
〈재화공급〉			
① 일반적 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인도시점(재화의 이동) · 이용가능시점(이동불필요) · 공급확정시점(모호한 경우)	익금으로 확정된 날 (권리의무확정주의)
② 개별적 기준	시행령제21조제1항제9호	재화의 인도시점·인도가능시점	권리 확정일
· 현금·외상판매	제1항제1호	인도시점	인도한 날
· 단기할부판매 (1년 미만)	제1항제1호	인도시점, 이용가능시점	인도시점, 이용가능시점
· 장기할부판매 (재화 인도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수금조건)	제1항제2호·제5항	대가의 각 부분 수취약정시점(받기로 한 때)	받았거나 받기로 한 날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제1항제3호	조건성취기한 경과로 판매확정시점	검사의 완료시점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공급	제1항제4호 통칙 9-21-3	대가의 각 부분 수취약정시점(계약금·착수금·선수금 등)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도급공사) 대금청산일·소유권이 전등기일·인도일 중 빠른 날(자산양도)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징발재산)
· 계속적 공급	제1항제4호	대가수취 약정시점	검침일(전기·수도·가스 등의 경우)
· 가 공	제1항제5호	인도시점	인도할 장소에의 보관시점
· 자가공급·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제1항제6호	사용 또는 소비시점	사용 또는 소비시점
· 폐업시 잔존재화	제1항제7호	폐업시점	폐업시점
· 무인판매기 재화공급	제1항제8호	현금의 인취시점	현금인취시점간주

거래구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	법인세법상의 수익귀속사업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재화 (외국인도무역) 월양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10호 제1항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적일, 수출재화공급가 확정일, 위탁가공시 외국에서의 인도일 공급가액 확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할 장소에의 보관시점 (선적일) 인도할 장소에의 보관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구역 이외로의 공급 보세구역 임치물반환 등 위탁매매·대리인매매 시설대여임대자산 현물출자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11호 제1항제12호 제2항 제3항 통칙 9-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 수리일 인취후 인도일, 수입신고수리일 수탁자·대리인의 공급기준 공급자·세관장의 직접인도시점 출자이행완료시점 (인도·법적등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한 날이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 수탁자·대리인의 공급기준 리스료 받기로 한 날 출자이행완료시점 (인도·법적등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인환증교환 내국신용장공급 면세물품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칙 9-21-2 통칙 9-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화의 실제인도시점 재화의 인도시점 판매확인서의 송부수취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화의 실제인도시점 권리확정일 인도한 날
<p><용역 공급></p> <p>① 일반적 기준</p> <p>② 개별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통상적 공급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기타 조건부공급 장기할부조건부공급 계속적 공급 모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9조제2항 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2호 제2호 제2호 제2호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무의 제공,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역무제공의 완료시점 대가의 각 부분 수취약정시점(계약금·착수금·선수금) 대가의 각 부분 수취약정시점(계약금·착수금·선수금) 대가의 각 부분 수취약정시점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금으로 확정된 날 (권리의무확정주의) 역무제공의 완료시점 작업진행률 등으로 계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날 임대인 경우 임대료로서 수입한 날

'영세율제도'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율인 10% 대신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영이 되게 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거래상대방인 당해 재화·용역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재화·용역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되는데, 영세율적용 재화·용역의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외국의 수입자 등이므로 수출가액이 낮아져 외화획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사업상 공급」이 일반과세대상이라는 포괄적 규정의 예외로서 면세재화와 용역은 법상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소비자입장에서 면세재화에 대해서는 10%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지 않아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지만, 제품의 생산자가 생산원가항목의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제품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가격으로 부담전가되므로 완전면세는 아니고 부분면세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은 그 면세목적 및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생활필수재화와 용역 : 미가공식료품(부산물·단순혼합포함, 김치·두부·첨가코팅된 쌀 등),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도물, 연탄과 무연탄, 대중교통여객운송용역,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국민후생적·공익적 재화·용역 : 의료보건용역(장례, 환자운반, 정화조, 소독 등 포함) 및 혈액, 교육용역, 우표·인지·증지·복권 및 공중전화, 저가담배·특수담배, 종교 등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화·용역 공급, 국가 등 공익단체에의 재화·용역 공급.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사회·문화 관련 재화·용역 : 출판(도서대여용역 포함)·방송·통신 등, 문화·예술·비직업체육분야, 도서관 및 공중전시관 등 입장용역, 전자출판물 포함
- 부가가치 생산요소 및 근로 및 개인적 인적 용역 : 토지, 금융(판매대행이나 부동산임대는 제외, 즉 과세됨)·보험용역, 저술·작곡 등 직업상·개인적 인적용역, 성과급적 용역제공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직업의 범위와 면세여부 판단

(대부분의 전문직업인이 99년부터는 부가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됨)

업종구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면세요건 등	과세되는 경우
의료보건의용역	의사·치과 의사·한의사·간호사·접골사·침술사·안마사·의료기사·약사의 조제용역·장의사·의료보건위생용역 등	한약방·조제아닌 단순의약품판매·무면허의사·수의사의 애완동물 의료용역 등
법률용역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용역, 법률구조용역	모든 법률관련 면허직업(변호사·법무사 등)
기술·공학	건축감독, 학술용역,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S/W개발용역은 2001. 7. 1부터는 과세됨)	전산처리용역·프로그램 대량공급·범용프로그램, 모든 기술관련 면허직업 ·컴퓨터이용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개발프로그램) : 2001. 7. 1부터 과세적용
교육훈련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교사	인가·허가 안된 교육기관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언론출판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광고
문화·예술	예술품·문화행사·순수예술행사·미술·음악·사진예술품	모방품·골동품·대량생산
기타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창업상담·직업소개업·작명·관상·점술·장애인 보조조건 훈련	경영상담·자문·기업자문 등·일반경영자문, 경제·경영 등 전문직업면허 및 결 혼상담업, 신용조사업
성과보수용역	개인이 별도의 물적시설없이 단독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독립적 인적용역 및 성과보수(방문판매, 회원모집, 대리운전)	다수연합조직, 고정장소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한 경우(방문판매, 회원모집 아닌 경우)

(3) 영세율과 면세의 부가세 세무절차 비교

구분	면세적용사업자	영세율적용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등록의무 있음).	있음.

구 분	면세적용사업자	영세율적용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계산서교부의무 있음).	있음(내국신용장 공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 해외직접수출시 교부의무면제됨. 원하면 작성·교부해야 함).
거래징수의무	없 음.	있음(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영이 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의무	없 음.	있 음.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은 없으며,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이 되지 아니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있음(미제출시 법인세법 등에 의해 불이익 있음).	있 음.
대리납부의무	있 음.	없 음.
기장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의무 있음).	있 음.
금전등록기 설치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의무가 있음).	있 음.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적용됨.

(4) 수출·외화획득 영세율과세표준 계산방법

수출 및 대가수취방법	현금환가, 사전환가 혹은 약정금액	외상매출(공급시기 이후 환가)
직접수출대금	현금환가액, TTB 등	기준환율·재정환율
내국신용장수출	약정금액, 현금환가, TTB 등	기준환율·재정환율
구매승인서수출(외화)	현금환가액	기준환율·재정환율
구매승인서수출(원화)	거래쌍방결정 원화액	약정금액에 따른 수취액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	현금환가액	기준환율·재정환율

기준환율·재정환율은 중심환율인데, 외화의상매출의 향후 실제 환가시 전신환매입률(TTB)로 원화 현금수취하게 되면, TTB는 대부분 기준환율보다 낮으므로 재무회계상 손익계산서에 환차손실이 발생함이 일반적임.



6. 과세거래징수와 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1) 매출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상대방의 매입부가가치세

재화·용역공급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인데, 이는 상대방(매입자)의 매입부가가치세가 된다. 거래종류나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모두 10%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 공급 이외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종업원의 소비·증여, 고객 등への 증여 등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아도 10%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물론 관련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공급거래시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자와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의 0.5%·1%·2%·3% 만큼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가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데, 대가관계의 유무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가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기타의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대가 지연지급의 연체이자 상당액, 재화·용역 공급후의 할인액 등이 있다. 지연지급이자 중 하루 1만분의 3 초과액은 과세표준이었으나 번거로와 2000년부터는 삭제하였으므로 지급지연이자 전체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작성 해당액이 아니다. 과세표준에서 차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감액하지 않는다는 뜻임), 즉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대손금(대손·부도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있음)·장려금 등이 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달리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 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환경·에너지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즉 다른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임).

(2)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거래징수세액 = 매입액 × 10%) -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때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징수당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과거 5년내 매출 중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대손처리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대손금액 × 10/110)를 추가로 빼준다. 여기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과 대손세액합계액의 차액은 환급세액이 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기 위하여서는 ①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과, 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제가능매입세액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적법히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세표준신고납부시 제출되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가능 증빙 : 적법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입전표 등 수취명세서(거래액이 전산기록되는 현금영수증도 포함)

(3) 공제불가능 매입세액의 종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안되는 것은 ①세금계산서를 적법히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②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과 불성실·착오기재부분 ④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의 구입과 유지, 리스·렌트 관한 매입세액, ⑦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⑧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⑨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⑩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



일 이내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내 매입세액 등이 있다.

7. 확정신고시 거래처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외계처리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공통요건 및 관련규정 등

구 분	개념 및 요건방법	관련규정 및 적용예시
거래시점	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한 과세대상 재화·용역	법률 부칙(93. 12. 31 신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공제가능 기간	재화용역 공급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금액 (2010. 4. 1 공급된 것이면 만 3년이 되는 2013년 상반기가 과세기간이므로 2013년 7월 25일까지 대손확정된 것이면 가능)	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 재화·용역 공급일(세금계산서 거래일자)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에 적용함. 2013년 거래분은 2016년까지임.
대손세액 공제시점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빼줌(즉 소멸시효된 날 등 대손확정된 날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점에 차감하고 납부세액 계산함).	법 제17조의2제1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가 아니고 확정신고서 제출하는 때에 신청함 : 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대 손 확 정 일	거래상대방의 파산선고일, 강제집행일, 사망·실종 선고일, 회사정리계 확인가 결정일,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일(상법 제64조는 5년간, 단서의 규정에 의거 민사 단기소멸시효규정 제163조 적용으로 3년간임),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시점(부도어음·수표는 부도일 6개월이 되는 날(만 6개월), 혹은 이때를 지나쳤다면 외상거래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일인 3년이 되는 때도 가능함).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 적용례 ① 어음(제3자 발행승계어음도 해당)·수표거래·부도방 찍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확정신고기간 ② 일반외상거래 : 매출(인도·세금계산서날)일부부터 만 3년이 되는 확정신고기간(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 우선 적용) ③ 회사가 원하면 일반 상거래도 단기소멸시효 적용으로 만 3년이 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능
대손세액 공제계산	부가가치세 포함 총 대손금액(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인정금액 : 시효완성금액)×10/110	법 제17조의2제1항 (회수못한 금액을 세금 등으로 지정하더라도 안분함)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96. 7. 1 개정)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된 부도어음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요약

세무처리방법	법인세법상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개념
부도발생일의 개념	지급기일기재일과 은행의 부도방확인 날 중 빠른 날(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좌 동
6개월된 날의 개념과 범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만 6개월이 된 날부터 이후 계속 채권의 소멸시효일까지(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	좌 동
손금산입시점, 대손세액공제시점	6개월된 연도부터 대손처리로 손금산입 가능⇒만 3년까지 혹은 최장 5년까지 선택가능(회사의 결산반영)	6개월된 바로 그 확정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강제됨.
부도발생일 관련사례	공급일 2013년 3월 31일, 부도발생일 2013년 6월 30일(부도방일자)⊕6개월은 2013년 12월 31일입⇒2013년부터 손금산입 2014년, 2015년까지 손금산입 가능	부도발생일 2013년 6월 30일(부도일)⊕6개월은 2013년 12월 31일입⇒2013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공급일 9월 30일, 부도발생일 2013년 12월 30일⇒6개월은 2014년 6월 30일임. 부도발생일 2013년 12월 31일→6개월은→2014년 6월 30일	좌 동

(3) 대손확정일의 개념

기업에서 장부나 재무제표상 대손금이나 대손상각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는 기업내부의 의사표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대손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파산·강제집행·소멸



시효경과 및 수표·어음 부도일(은행에서 어음 등에 부도라고 표시 혹은 확인한 날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만 6개월)이 대손확정된 날이다. 따라서 장부 등에 대손상각비라고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은 대손금으로 결산회계 반영하여야 손금산입된다.

(4)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경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손이 확정된 경우 :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②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다음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함.
- ③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 회수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 ④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받았으나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변제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또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부도어음·수표 사본 및 채권배분계산서, 판결문 등과 매출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재화·용역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관련 쌍방의 공제 상황 -

경 우	재화·용역공급자(판매자)	재화·용역구입자(매입자)
일반적인 대손(정상운영 상태에서의 대손발생)	대손세액공제(대손확정시점의 매출부가세에서 차감)	대손확정시점(지급불능시점)의 매입세액에서 뺀(매입세액공제 안됨)
대손확정전에 공급자, 판매자의 폐업	대손세액공제 안됨(정상적 운영의 사업자에게만 적용, 폐업자는 적용 안함).	기존의 매입세액공제 적용에 변동없음.
매입자의 폐업전에 대손 확정	대손세액공제 적용됨.	매입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제외)
매입자의 폐업후에 대손 확정(매입자는 부가세 신고 못함)	대손세액공제 적용됨.	세무서장이 매입세액 제외로 결정함.

경 우	재화·용역공급자(판매자)	재화·용역구입자(매입자)
매입자의 폐업전 대손확정되었는데 매입세액 제외 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됨.	세무서장이 매입세액 제외로 결정함.
대손금이 향후 상환변제됨.	변제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 납부함.	변제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 받음.

(5) 매출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과정과 세무상 주의점

① 재화·용역 판매시(2013. 4. 10)

(차) 외상매출금 1,100,000 (대) 매 출 1,000,000
 (혹은 받을어음) 부가세예수금 100,000

② 부도 및 대손이 된 경우(2013. 5. 10)

(차) 부도채권 1,100,000 (대) 외상매출금 1,100,000

③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반영한 날짜(2013. 11. 10)

(차) 대손상각비 1,100,000 (대) 부도채권 1,100,000
 (혹은 대손충당금)

(대손세액공제를 미리 적용받은 경우는 해당 부가세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대손상각비로 떨어낸다)

※ 부도대손이 확정된 경우(어음부도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 ③과 같이 대손상각비로 장부 및 재무제표상 회계처리 반영하지 않아도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의 공제신청으로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됨.

④ 대손세액공제신청으로 해당세액이 환급(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줄임납부 혹은 환급될 세액의 늘임환급)된 경우의 회계처리

· ②와 같이 부도·대손회계처리만 한 경우는(아직 대손금액을 장부상 떨지 않은 경우)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 부도채권 100,000
 (혹은 현금)

· ③과 같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가 끝난 경우(이미 대손 떨어진 경우)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 잡이익 100,000
 (혹은 현금) (영업외수익)



⑤ 대손세액 공제받은 채권이 나중에 상환 받거나 변제되는 경우 : 받으면 부가세 납부함.

· 상기 ②와 같이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차) 현금	1,100,000	(대) 부도채권	1,000,000
		예수부가세	100,000

· 상기 ③과 같이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

(차) 현금	1,100,000	(대) 상각채권 추심이익	1,000,000
		(영업외 수익)	
		예수부가세	100,000

(6)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의 관련성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적용과는 별도로(즉, 대손세액공제 처리를 못했어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대손확정된 금액을 세무상 대손상각비로 반영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하면 회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당금과 대손액을 먼저 상계한 후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직접 감액처리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열거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 제 (2013. 2. 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 가.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창업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 2. 4 신설)
 -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 제 (2010. 7. 21)



-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신설)
- ⑧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금융감독원 승인 및 대손처리 요구금액, 금융기관 채권으로 승인받은 것, 외국환은행장 승인금액, 세무서가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채권,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회사정리계획인가된 채권 등)

일반기업의 경우는 상기의 여러 회수불능 대손인정사유로 부도 6개월된 어음·수표,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민법」의 단기소멸시효적용 3년)된 외상매출금(5년) 정도가 대부분이다.

(7) 대손세액공제요건의 대손사례별 요건개념

- 「파산법」상의 파산·강제화의 등 : 파산선고시부터 효력발생
-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 「민법」·「형사소송법」·각종 세법·「국세징수법」도 포함됨.
- 사망실종선고(실종선고는 부재자 생사가 5년간 불명시 선고)
-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소멸시효완성 등

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과세방법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분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법인, 직전 연 4천800만원 이상 매출 개인사업자 모든 법인, 개인 대사업자(연매상 1.5억원 이상) 간이과세포기한 사업자(3년간), 신규사업자	직전 연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제외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 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개인, 소규모사업자(연 4,800만원), 신규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적용신고자)

구분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개인	모든 법인, 대규모 개인사업자	개인
업종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면허직업	왼쪽 제외한 업종(유흥업·부동산임대업 가능)
수입금액 기준	납세자 신청 없으면 언제나라도 가능(직전 1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일반사업자임)	직전 1년간 수입 · 4,800만원 미달(모든 업종)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인 경우
과세표준	공급가액(거래금액 부가세 제외)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신고·납부	· 1년에 4번 신고납부 (1.1~1.25, 7.1~7.25 : 확정신고) (4.1~4.25, 10.1~10.25 : 예정신고) ·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의 중간 2번의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자동발부함(매기별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 1년에 1번 확정신고 납부 · 예정신고대상자에게 부과고지후 납부
부가가치세액계산	㉔ 매출세액(=매출액×10%) - 세금계산서 있는 적법매입세액(=매입액×10%) - 대손세액(=대손액×10%=매출액×10/110)	㉕ 매출액(공급가액)×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5, 10, 20, 30% 등)×10% - 매입세액×5%, 10%, 20% 혹은 30% 업종별이익율 그대로 적용함) · 업종별부가가치율 : 1.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3.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제화·용역공급시의무	정식세금계산서 작성·교부(2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 작성교부(2부)
공제세액(매입세액)	· 매입세액 전액 공제(매입원가×10%)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거래금액×10%)의 5%, 10%, 20%, 30% 부가가치세 인정이익율 대로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함.



구분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분의 조기·일반환급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하지 않음.
과세유형 전환	· 포기신고에 의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음.	· 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감가상각 자산신고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 - 감가상각자산 신고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 - 감가상각자산 신고
기장의무 등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 · 매입·매출장 등 증빙비치·기록·기장의무가 있음.	· 영수증을 발행해도 기장으로 봄. · 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하는 것으로 봄.
현실적 이용의 편의성 판단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에 오르면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횟수도 빈번해, 일반사업자의 정식 세금계산서교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외형누락이나 거래사실은폐가 어려움. 거래증빙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 최종 소비자라도 확실한 것을 좋아 하는 경우 선호할 수 있음.	사업초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유리, 일명 구멍가게·소상인이 활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가 필요없고 가격을 저렴하게(부가가치세 해당액인 약 10%) 구입하려는 최종소비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을 선호할 수도 있음.

(2) 간이과세제도의 현실성 여부와 과세운영 방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개인자격으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일반사업자보다는 간이과세자일 경우가 많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법」상 지켜야 할 납세관련의무가 비교적 간단하며, 매출액이나 수익력도 취약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담도 비교적 가볍게 규정되어 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1년간의 재화나 용역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포함대가인 총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해의 다음 해까지 간이과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이때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아무리 구멍가게 자영업자라 하여도 1년간 총 외형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 특히 이익률을 30%라 가정하면 자영업자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그의 소득은 1천5백만원 가량(= 4,800만원×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실제 우리주변의 자영업자의 생활수준과 씹씀이 등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이 연 4,800만원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면이 강하며, 또한 전국의 수십만 사업자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라는 사실도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결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는 누이 편하고(세무서의 세금징수간편) 매부 좋은(간이과세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이 저렴) 관계에서 상당히 낮은 금액기준하에 세금징수와 조세저항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한 현실 결과라 보면 된다.

(3)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방법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5%, 10%, 20%, 30%)×10%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매입부가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5%, 10%, 20%, 30%)을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 주지 않고 매입세액의 5%(혹은 10%, 20%, 30%)만 공제하여 주며,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간이과세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물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정부의 고지징수방법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와 같이 자진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진자 및 신규개업자가 자진신고납부방법을 통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다.



9.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1) 거래발생 및 대가수ushi 작성되는 과세자료의 종류와 작성방법 개괄

계산서란 모든 거래에서 작성교부되는 거래증빙을 대표하는 넓은 의미인바, 사업상 거래와 인적용역 및 업무제공 상대방간의 소득발생행위와 지급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자율신고납부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를 위한 필요증빙 및 과세자료로서 작성교부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영수증, 국세청에 신고된 계산서(지로납부서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전등록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이 있고, 이들을 주고 받으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 표현인 "계산서"라는 말에 "세금"자가 추가로 붙어 "세금계산서"가 된 것이다. 여기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이르는 말로서 당해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기록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금액이므로 "세금"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른다. 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증빙을 세금계산서라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증빙은 계산서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 이외에는 계산서, 영수증, 지로영수증, 이자계산서, 배당계산서, 보험료계산서, 전문용역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표, 금전등록기계산서 등 거래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발행한다. 참고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성명 등 인적사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세금계산서만 해당), 작성공급일자, 거래내역 등이 기재된다. 국세청에 별도 신고된 기업자체계산서에는 공급자번호, 명칭, 공급받는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그러나 임의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가액 등만 기재되며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2) 사업상 공급, 비사업상 업무의 제반 거래증빙 유형

- 사업상 재화·용역공급자의 거래증빙

(공급자, 대가나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작성교부 제출 -

모든 사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모든 경우, 일반 사업자-계산서 2장(세금계산서는 계산서로 봄) ○ 소매업자,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 금융·보험용역, 위생, 사회, 오락, 가사업-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 노점상, 행사, 무인판매기, 시내버스-불필요(계산서, 영수증 작성·교부 면제) 	국세청입력 현금영수증
과세사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사업자, 법인 등-세금계산서 2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거래금액과 세금을 구분기록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현금영수증 ○ 세관장(재화의 수입시)-수입세금계산서 ○ 소매·음식점·숙박·이미용·여객운송 등-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구분기록·확인시 매입세액 공제가능), 현금영수증 ○ 비사업자의 공급(과자·방앗간·양복·양장·주차·중개 등)-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연 외형 4,800만원 미만 사업자)-세금계산서 작성불능,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발행 가능 	
면세사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자·중소규모 이상 사업자-계산서 2장(재화·물품), 용역대가(소득 지급자가 작성·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함), 현금영수증 ○ 소매업자·금전등록기설치 사업자-영수증, 금전등록기 계산서 ○ 금융·보험·용역·위생·사회·오락·가사-영수증, 금전등록기 계산서, 기타 차제영수증 등 	
비사업 거래-일반 영수증, 사적인 영수증, 청구서		

- 근로·노동제공과 기타 경제적 가치 제공시의 거래증빙

(공급받는 자, 대가나 소득의 지급자가 작성 교부 제출) -

인적용역(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적 고용근로, 노동제공(근로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장 ○ 종속적 고용근로, 노동제공(퇴직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장 ○ 독립적 인적용역, 노동제공(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장 ○ 전문적 인적용역, 사업·사회서비스업-공급자는 면세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소득지급자가 작성·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작성·교부로 봄 ○ 기타의 용역(기타소득)-일반 원천징수영수증, 일반 지급명세서 3장(기타소득이라 표시) 	
자금제공(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금·차입금·융자금 등(이자소득)-일반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3장(이자소득이라 표시) 혹은 거래통장에 1년 이자, 세금합계를 기록해 줌. ○ 자본금·출자금·지분금(배당소득)-일반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3장(배당소득이라 표시) 	
외국인에 대한 제반 소득지급(이자·배당·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등)-일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3장을 작성·교부·제출(소득종류 표시)		



(3)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의 뜻과 사실 근거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공급이 적법히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작성되고 교부되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인도받고 해당금액을 지급할 뜻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물건을 전달했으나 상대방이 인수하지 않거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는 재화·용역이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거래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거래의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어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의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4)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시기와 거래일자 기재요령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거래시기일자에 작성 교부되는데 거래시기란 재화·용역이 공급·제공·인도되고 금액이 쌍방간에 확정된 때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현실적으로 작성일자일 이후에 전달되거나 우송되며 상호 전자계산조직으로 전송된 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될 수 있다.

- 재화·용역 거래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쓰는 날 -

재화·용역 거래형태	거 래 시 기
일반적인 재화판매,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판매(1년 미만까지)	재화의 인도일, 이용가능일자
장기할부판매(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까지 1년 이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부약정한 때
반환·동의 조건부판매, 기한부 판매	조건성취일, 기한경과일
월합계. 일부기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각 월말 혹은 1달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말일자로 작성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
건설·장기용역(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나 기타 조건부 계속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자
일반적인 용역공급(중장비건설, 인적용역)	용역제공 완료후 공급가액 확정때
수출재화는 수출재화선적일 : 보세구역매출일은 수입면허일, 공급대가확정일	해외위탁가공무역은 해외수탁법인이 재화 인도하는 날

재화·용역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 작성일 (쌍방간에 합의되고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
--	--------------------

(5)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관련 세법상 요건과 규제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매번 거래마다 공급자(대가를 받는 자)가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1부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공급받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에 근거함이란 공급대가·수량·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일자(공급시기)·공급장소 등이 거래사실대로 기록됨을 뜻한다. 사실(장소, 날짜, 상대방)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10% 매입 세금부담은 했으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손해다.

(재화·용역공급자(매출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 발급,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필요기재사항의 누락, 사실과 다른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됨(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의 미전송가산세의 경우 2013년까지는 0.3%)
- 세금계산서의 의도적 미교부,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신용카드매출 전표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는 경우, 비사업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됨.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누락기재, 사실과 다른 기재
 - 해당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과
-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미제출이나 누락제출
 - 해당 공급가액의 1%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무신고·불성실신고
 - 무신고시는 무신고액×20%, 과소신고시는 과소신고액×10%, 부당무신고·과소신고는 무신고액(미달신고액)×40%
- 초과 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시 초과환급세액×10%, 부당초과 환급신고시는 초과



환급세액×40%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미납부·과소납부
 - 미납·과소납 : 세액×기간×하루 1만분의 3(0.03%×365=1년당 10.95%)
-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해당공급가액×10%의 부가가치세 본세를 추징하며 상기의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미납부가산세·미교부가산세 등)
-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처벌
 - 「조세범처벌법」상 1년 징역이나 세금의 2배 벌금형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매입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 매입세금계산서없이 공제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매입가액의 1%의 가산세 부과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매입세액공제가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매입세액공제 적용신고·납부되었다면 추징됨.
- 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 없어 공제하지 않았으나 향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 추가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 공급자의 매출세액 추징된 세액
 - 공급자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해 올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의 기회가 상실되었으므로 쌍방의 이해관계가 충돌됨. 따라서 거래내용의 세금계산서 미작성,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불이행 등의 귀책사유를 따져 쌍방이 조정해야 할 듯(쌍방과실인 경우나 쌍방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덜 낸 경우 추징된 세액의 부담은 서로 협의하나 과실불분명시 각 50%씩 배분 부담함이 합리적임)
- 세금계산서를 억지로 교부받지 않는 경우
 - 3년 징역이나 100만원 벌금

10. 부가가치세법 위반의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법」은 질서법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위배해도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매출세액추징 등 불이익이 적용됨. 특히 거래장소, 공급일자, 거래시기 등의 기재내용에 주의를 기해야 함.

(1) 부가가치세 위반유형별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각 위반유형별 가산세 비교 요약 -

조항 (법§22)	유 형	가산세 적용 사유	기 준 금 액	가산세
1항	사업자미등록	· 사업자등록을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혹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
2항	세금계산서부실기재교부가산세	1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 발급 2호 : 착오 또는 과실로 공급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허위기재시 3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기한후 전송(0.5%) 4호 : 전자세금계산서교부사업자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미전송시 5호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예정·확정신고기한내 적법히 제출하지 않고 경정기관확인 후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당해 공급가액	1% (3호 및 4호는 2013년까지 0.1%, 0.3%)
3항	세금계산서미교부·허위교부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당해 공급가액	2%
4항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가산세	본문 : 1. 합계표 미제출 2. 부실기재·허위기재 3.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사항 착오(미확인)문제	당해 공급가액	1%
	자연제출			0.5%



5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 합계표에 의하지 않거나 과다기재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 등록번호 착오기재(확인되는 부분) · 공급가액 부실기재	당해 공급가액 (예정신고 매입자료가 확정 신고시 제출· 신고되어도 가 산세불이익 없 음)	1%
6항	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가산세	· 비사업자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당해 공급가액	2%
7항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전문직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부실기재 제출한 경우	당해 수입금액	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3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당해 세액	10%
		무신고시		20%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40%			
신고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세액× 기간× 하루당 0.03%			
	영세율적용과표신고 불성실가산세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	0.5%

(가산세의 이중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적용을 배제한다.

-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실기재 가산세 및 매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여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함에 따른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와 전자세금명세서 교부명세 기한 후 전송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2) 부가가치세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 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물류흐름 및 재고관리가 가능한 ERP구축 등의 일정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사업자단위 과세신청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부가세 신고·납부 가능(세금계산서 작성·교부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일화 가능함).
- ② 부동산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2012년 하반기부터) : 3.4%(예를 들어 부가세=보증금×3.4%×3개월 해당 날짜/12개월 날짜×10%)
- ③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일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된 날 : 만 6개월날(←중전 6개월경과 즉 6개월⊕1일)
- ④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 부가세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도 과세형평차원에서 50일에서 25일내 신고로 변경
- ⑤ 간이과세자 및 매기별 고지세액 2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도 예정고지제도 폐지
- ⑥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간이과세자) :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자는 2.6%), 연간 500만원 한도(직불카드, 현금영수증도 가능)
- ⑦ 결제금액의 1.3%(음식·숙박업자는 2.6%)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범위를 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포함시킴(시행령 제80조제2항).
- ⑧ 매입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현금영수증 포함) 제출을 명문화함 : 전산데이터로 제출해도 가능(시행령 제60조).
- ⑨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시행령 제7조).



- ⑩ 2003년부터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2003년 7월 1일부터 주거용 주택설계용역도 부가세 면제(「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 제3호)
- ⑪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함(2004. 7. 1 이후).(시행령 제35조제1호 및 제2호)
- ⑫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부가세 면세(2004년 4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제3의2호), 도서대여용역도 면세(2007년 1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제7호)
- 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영세율)이라도 별도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되면 그대로 과세로 봄(영세율, 과세율 세금계산서 어느 것이든 가능).
- ⑭ 구매승인서 매출의 영세율 적용요건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각 6개월) 종료후⊕20일 이내로 완화(←종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이었으나 20일이 추가됨)
- ⑮ 면세되는 학술·기술용역이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임(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 기술과 용역 S/W개발업은 과세로 전환)
- ⑯ 토지, 건물, 구축물의 함께 공급시 배분계산
첫째, 구분실거래가액대로→둘째, 구분불분명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공시지가 등) 비율대로 배분, 단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비율대로 배분이 우선임→셋째, 어느 하나라도 기준시가 없고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 비율대로 배분→넷째, 감정가액 없으면 장부가액비율대로 배분한 후 기준시가 안분→다섯째, 장부가액 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대로 배분
- ⑰ 영세율 입증서류로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사본 대신에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제출만으로도 가능(2003년부터)
- ⑱ 금융기관의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아니고 과세대상임(단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시설대여용역은 제외, 즉 면세임)
- ⑲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해외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이며, 완성된 제품의 총인도가액이 과세표준임(시행령 제48조제12항).
- ⑳ 화의인가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회수기일 6월

- 이상 경과한 20만원 이하 소액채권 등 대손세액공제 가능(시행령 제 63조의2)
- ㉑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 : 2003년부터 1일 0.03%(연 10.95%)
←중전 1일 0.05%(연 18.25%)
 - ㉒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통괄장소를 사업자 등록함(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음).
 - ㉓ 장기할부판매 개념을 재화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함.
 - ㉔ 인·허가사업 폐업신고시 폐업신고서사본 등 첨부
 - ㉕ 부가세를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
 - ㉖ 2005년부터 이식용 각막 수입시 부가세 면제
 - ㉗ 2007년 하반기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㉘ 2006년부터 공매·경매거래는 부가세 과세제외(면제)
 - ㉙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전기·가스·수도업은 5%, 소매업·음식점업은 10%, 제조업·숙박업은 20%, 건설업·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업은 30%) 적용
 - ㉚ 재화·용역공급후의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㉛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1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실제 사례연습

각자 다음 사업내용을 갖고서 해당 서식에 기재해 보세요!

(1) 회사개요

○ (주)△△기업 : 가전제품 도·소매

○ 대표자명 : 김××

(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 1) 4/1~6/30까지 공급가액 180,000,000원(세금계산서 150매)
영세율 매출액 70,000,000원(세금계산서 70매)
- 2) 4/1~6/30까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20,000,000원(100매) / 고정자산(에어컨 3대) 매입금액 10,000,000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분(이면확인) 1,500,000원
- 3) 2)에는 거래처 접대비 10,000,000원이 포함.



- 4) 아래의 것은 제1기 예정신고시에 누락된 것으로, 확정신고시에 포함시키고자 함.
- ① 매출세금계산서 중 8,000,000원은 3/5자 발행분임.
 - ② 제품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1건(공급가액 4,000,000원)
 - ③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6,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원)
- 5) 제1기 예정기간 중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이 있음.
 거래처명 : (주)□□상사 대손금액 : 4,400,000원 공급일 : 2011.1.2
 대손확정일 : 2013.3.15 대손사유 : 파산
- 6) 소매매출 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20,000,000원이 있음.
- 7)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 미환급세액이 1,500,000원이 있음.

(3) 계산과정

- 1) ⑮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법인은 해당안됨)

$$\begin{aligned} \text{공제세액} &= \text{신용카드매출액(소매업)} \times \frac{13}{1,000} \text{ (연 500만원 한도)} \\ &= 20,000,000 \times \frac{13}{1,000} = 260,000\text{원} \end{aligned}$$

- 2) 가산세

- ⑮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begin{aligned} \text{지연제출가산세} &= \text{공급가액} \times \frac{5}{1,000} = 8,000,000 \times \frac{5}{1,000} \\ &= 40,000\text{원} \end{aligned}$$

- ⑯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달세액 × 10% × 50% (6개월 이내)

$$= (800,000 - 600,000) \times 10\% \times 50\% = 10,000\text{원}$$

- ⑰ 납부불성실가산세(기간 : 4월 26일~7월 25일 = 91일)

$$\begin{aligned} &= \text{미납세액} \times \text{기간} \times \frac{3}{10,000} = 200,000 \times 91 \times \frac{3}{10,000} \\ &= 54,600\text{원} \end{aligned}$$

- ⑱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4,000,000 \times \frac{5}{1,000} = 20,000\text{원}$$

(4) 작성예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제1장 앞쪽)

관리번호	년 기 (월 일 ~ 월 일)	처리기간	즉시
------	-------------------	------	----

사업자	상호 (법인명)	△△기업	성명 (대표자명)	김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구 분	① 신 고 내 용	금 액	세 율	세 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80,000,000	10/100	18,000,0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70,000,000	0/100	
		기	(6)		0/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12,000,000		800,000
		대 손 세 액 가 감 합	(8)	△4,400,000		△400,000
합 계			(9)	257,600,000	0	18,400,000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0)	120,000,000		12,000,000
		고정자산 매입	(11)	10,000,000		1,000,000
		고정신고 누락분	(12)	6,000,000		600,0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기타공제매입세액	합계(10)+(11)+(12)+(13)	(14)	137,500,000		13,75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10,000,000		1,000,000
		차 감 합 계 (15)-(16)	(17)	127,500,000	(나)	12,750,00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가)-매입세액(나))	(18)		(다)	5,650,000
경감·공제세액	기타 경감·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20,000,000		260,000	
합 계			(20)	20,000,000	0	260,000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1,500,000	0	1,500,000
예 정 고 지 세 액			(22)		0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0	
가 산 세 액 계			(24)		0	124,600
차기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다-라-아-바-사+예)				(25)		4,014,600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② 국제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③ 폐업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④ 과세표준 명세			
업 태	종 목	업종 코드	금 액
(26)			
(27)			
(28)			
(29) 수입금액 제외			
(30) 합 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장 앞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예정신고 누락세	(7)매출	과세	세금계산서 (31)	8,000,000	$\frac{10}{100}$	800,000
			기타 (32)		$\frac{10}{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33)	4,000,000	$\frac{0}{100}$	
			기타 (34)		$\frac{0}{100}$	
			합계 (35)	12,000,000		800,000
	(12)매입	세금계산서 (36)		6,000,000		600,000
		기타공제매입세액 (37)				
		합계 (38)		6,000,000		600,000
(14) 기타공제 매입세액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량	일반매입 (39)	1,500,000		150,000	
	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40)				
	의제매입세액	(41)			뒤쪽 참조	
	재활용패자원 등 매입세액	(42)			뒤쪽 참조	
	고금의제매입세액	(43)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재고매입세액	(45)				
변제대손세액	(46)					
		합계 (47)	1,500,000		150,000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10,000,000		1,000,00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대손처분 받은 세액	(50)				
		합계 (51)	10,000,000		1,000,000	
(18) 기타 경간·공제 세액 명세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5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53)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54)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5)				
	기타	(56)				
		합계 (57)				
(24) 가산세 명세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사업자미등록등	(58)		$\frac{1}{100}$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59)		$\frac{2}{100}$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과세기간 내	(60)		$\frac{1}{1,000}$	
		과세기간 경과	(61)		$\frac{3}{1,000}$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62)	8,000,000	뒤쪽참조	40,000	
	신고 불성실	(63)	200,000	뒤쪽참조	10,000	
	납부 불성실	(64)	200,000	뒤쪽참조	54,6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65)	4,000,000	$\frac{1}{100}$	20,000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66)		$\frac{1}{100}$		
		합계 (67)	12,400,000		124,600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태		종목	코드번호	금액	
	(68)					
	(69)					
	(70)	수입금액 제외				
				(71)합계		
계산서 발급 수취 명세	(72)	계산서 발급금액				
	(73)	계산서 수취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